임예진 관세법(2024년 대비) 정오

p.28 : 법 제16조 ①

① 법 제143조 제6항(법 제151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→ 외국물품인 선박용품, 항공기용품, 차량용품, 국제무역선·국제무역기·국경출입차량 안에서 판매할 물품,「원양산업발전법」제6조 제1항,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·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자가 조업하는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확인한 물품이 하역허가의 내용대로 운송수단에 적재되지 아니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: 하역을 허가받은 때

p.31 : 법 제19조 제1항 ②

② 법 제143조 제6항(법 제151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→ 외국물품인 선박용품, 항공기용품, 차량용품, 국제무역선·국제무역기·국경출입차량 안에서 판매할 물품,「원양산업발전법」제6조 제1항,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·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자가 조업하는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확인한 물품이 하역허가의 내용대로 운송수단에 적재되지 아니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 : 하역허가를 받은 자